

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융회사등의 범위)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2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3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4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5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
6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7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8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9. 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제3조(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조(산출업무규정의 승인)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 규정(이하 “산출업무규정”이라 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

가. 중요지표에 대한 정의, 설명, 산출 방법 및 절차

나. 기초자료(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한 수치, 호가(呼價), 평가액 또는 추정치 등의 자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정의, 설명, 선정 기준, 산출 방법 및 절차

다. 기초자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

라.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통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상황에서 중요지표 산출을 위한 처리 기준 및 절차

마. 중요지표의 공시 주기 및 방법

바. 중요지표 산출 및 절차 상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 시정 절차

사. 중요지표 산출 및 절차 상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처리 절차

아.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대비한 비상계획

자.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련 사항

차. 기초자료 부족, 관련 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해당 중요지표 산출

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
카. 중요지표의 대표성 유지를 위해 산출 방법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경우 변경 필요성 및 변경 주기에 대한 근거

2. 중요지표 설명서

가. 중요지표의 정의, 설명 및 용도

나. 기초자료의 정의, 설명 및 선정 기준

다. 중요지표 산출 절차

라. 중요지표 산출방법 및 절차에서 오류 발견 시 시정 절차

마.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

바. 중요지표 설명서 변경 이력 및 변경 일자

사.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의 중요한 변경,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이 초래할 수 있는 상황과 이로 인해 금융상품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

아. 중요지표 산출방법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중요지표 설명서에 신속하게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

3.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

가. 조직구조 및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분장

나.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,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는 절차

다.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중요지표 관리위원회, 임원, 감독 또는 감사 담당부서가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

라.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산출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
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마. 내부통제장치의 주기적 점검 또는 변경 절차

바.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·방법과 내
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방안

사.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
준

아. 중요지표 왜곡 또는 조작 등과 관련한 내부고발 처리 방안

자. 왜곡·조작 또는 오류 등이 의심되는 기초자료를 검증하기 위한
사전·사후적인 방법

차. 중요지표 산출 및 변경 관련 공시 및 의견수렴 절차

카. 중요지표 산출업무 담당 직원의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

4.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이하 “기초
자료제출기관”이라 한다. 이하 같다.)이 준수해야할 기준·절차

가.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요건 및 선정절차

나. 기초자료의 보관 및 제공 절차

다. 기초자료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, 역할, 책임 및 교육

라. 기초자료 제출업무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는
내부통제장치

마. 중요지표산출기관이 기초자료 제출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을
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

바. 기초자료 제출과정에서 통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상황에서 중요지표 산출을 위한 처리 기준 및 절차

사. 왜곡·조작 또는 오류 등이 의심되는 기초자료 발견 시 내부보고 절차

아. 기초자료 제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,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는 절차

5. 기초자료제출업무 관리·감독 방법

가.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업무의 점검·검사에 관한 사항

나.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의 주기 및 방법

다.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의무 위반 시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

6. 산출업무의 위탁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

가. 수탁자의 상호·명칭, 위탁업무·범위 등 위탁관련 정보

나. 수탁자가 업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

다.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위준칙

라. 수탁자의 행위준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방법

마. 업무위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평가

바. 위탁한 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경우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출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②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승인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요청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) ①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위해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대해 승인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상호
2. 본점의 소재지
3. 임원에 관한 사항
4.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
5. 인력·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

6.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
7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(“중요지표 관리위원회”라 한다. 이하 같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

2. 본점의 주소를 기재한 서류

3.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

4.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산출업무규정

5.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되, 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)

6. 신청일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(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

7. 그 밖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제출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.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
2. 제5항에 따라 제출서류의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

⑥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항 중 “승인 받은 날”은 “승인을 신청한 날”로 본다.

제6조(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없는 자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일 것
2.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없는 외부 위원이 2명 이상일 것
-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장 또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직접적으로 수

행하는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임직원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④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,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조(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)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
2.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, 점검 결과 공시 및 산출업무규정 위반시 조치에 관한 사항
3. 법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중요지표의 신뢰성·타당성 확보를 위한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8조(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)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되는 즉시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

여야 한다.

제9조(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)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.

1.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승인 절차
2. 중요지표산출기관의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조직
3. 산출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선임·해임과 관련된 절차

제10조(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 점검) ①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이 해당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경우
2. 그 밖에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 등 산출과정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②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인회계사 또는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회계법인
2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사반

3. 변호사 또는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법률사무소, 법무법인, 법무법인
(유한), 법무조합

제11조(자료의 기록·관리) 법 제6조제7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. 다음 각 목의 사항
에 관한 자료:

1. 기초자료제출기관:

- 가. 기초자료 제출 절차·방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기록한 자료
- 나. 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근거자료
- 다. 기초자료 제출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및 역할에 관한 자료
- 라. 제4조제1항제4호바목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초자료를 제출한
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2. 중요지표산출기관:

- 가. 기초자료 등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자료
- 나.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및 역할에 관한 자료
- 다. 중요지표 산출 결과를 기록한 자료
- 라. 제4조제1항제1호라목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중요지표를 산출한
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마.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내역에 관한 자료

3. 중요지표사용기관:

- 가.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통계에 관한 자료
- 나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와 교부 실적을 기록한 자

료

다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 계약에 관한 자료 제12조(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)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“중요지표 사용 지침 공시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
1. 중요지표산출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요지표 사용시의 유의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명령
2. 해당 중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표에 관한 안내하도록 하는 조치
3. 해당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계약에 대한 안내하도록 하는 조치
4.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

제13조(중요지표의 사용)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계약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.

1. 「은행법」, 「한국산업은행법」, 「중소기업은행법」 또는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예금, 적금 및 대출,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대출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상품
3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상품

4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, 시설대여, 연불판매, 할부금융

5.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외국환

6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

② 법 제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.

1. 중요지표를 대체할 금융거래지표, 대체지표로 선택한 근거

2. 중요지표를 대체지표로 전환하는 절차와 일정

3. 금융계약 상대방에 대한 변경사실 안내

4. 그 밖에 금융지표 산출 중단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14조(조치명령권) 법 제11조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

2. 기초자료 제출 또는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

3.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

4.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·절차 및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에 대한 중요지표산출기관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

제15조(과징금의 부과기준)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

다.

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6조(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준용)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, 제5조 및 제15조 중 “금융위원회”는 “기획재정부장관”으로 본다.

제17조(권한의 위탁) ① 법 제1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

1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
2.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
3. 법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
4. 법 제8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
5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·검사(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)
6.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의·경고(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

정한다)

7.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 중 경고·주의 또는 제5호에 따른 조치요구(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)

8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국 산출기관 신고 수리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

9.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 보완 요구

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6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다.

1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

2.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

3. 법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

4. 법 제8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

5.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 명령

6. 법 제12조에 따른 감독·검사

7.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 보완 요구

⑤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금융위원회”는 “기획재정부장관”으로, “금융감독원장”은 “한국은행 총재”로 본다.

제1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금융위원회(법 제17조 및 이 영 제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4조에 따른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

2. 법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무

3. 법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산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
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무

4. 법 제8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
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무

5.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

6. 법 제12조에 따른 감독·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

7.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

8. 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산출기관 신고 수리, 지정요건 구비여부

심사 및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

9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한 금융거래지표의

중요지표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

10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

의 조치 결과 접수에 대한 사무

11.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무

② 기획재정부장관(법 제17조 및 이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다.)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무

2. 법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산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
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무

3. 법 제8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
수리 및 조치에 관한 사무

4.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

5. 법 제12조에 따른 감독·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

6.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

7.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무

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의 산출업무에 관한 사무

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무

제1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■ [별표 1]

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같은 과징금의 금액(제1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,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업무정지 기간	과징금 금액
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6개월	1억원
나.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3개월	5천만원
다.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1개월	2천만원
라.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1개월	2천만원
마.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3개월	5천만원
바.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및 결과 공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3개월	5천만원
사. 법 제6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산출업무규정의 중요 사항을 개정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3개월	5천만원

법·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			
아. 법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1개월	2천만원
자. 법 제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3개월	5천만원
차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6개월	1억원
카.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6개월	1억원
타.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6개월	1억원
파.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6개월	1억원
하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1개월	2천만원
거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거나 해당 비상계획을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및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3조제2항	1개월	2천만원
너.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왜곡,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13조제2항	6개월	1억원
더.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3조제2항	3개월	5천만원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

1. 과징금의 산정기준

가. 기본과징금의 산정

- 1) 기본과징금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)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2)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,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,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“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”, “중대한 위반행위”, “매우 중대한 위반행위”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나. 기본과징금의 조정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,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,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의 협조 여부,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다. 부과과징금의 결정

- 1)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,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,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,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.
- 2)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·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,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,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,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2. 세부기준

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, 기본과징금의 조정, 부과과징금의 결정,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

시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1호	500
나.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2호	300
다.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3호	300
라.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4호	500
마.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및 결과 공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5호	500
바. 법 제6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산출업무규정의 중요 사항을 개정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6호	500
사. 법 제6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·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2항제1호	250
아. 법 제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500
자. 법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2항제2호	250
차. 법 제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1,000
카.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	법 제19조제1항제8호	1,000

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
타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3항제1호	100
파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거나, 해당 비상계획을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9호	300
하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3항제2호	100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852